

보조공학사 특례시험 대비 연수

2020년 7월 18일

前 한국보조공학사협회 총무 남양지

- 보조공학사 직업윤리
- 보조기기 관련 법령 및 서비스 전달체계
- 장애학
- 재활공학
- 재활학



“

보조공학사 직업윤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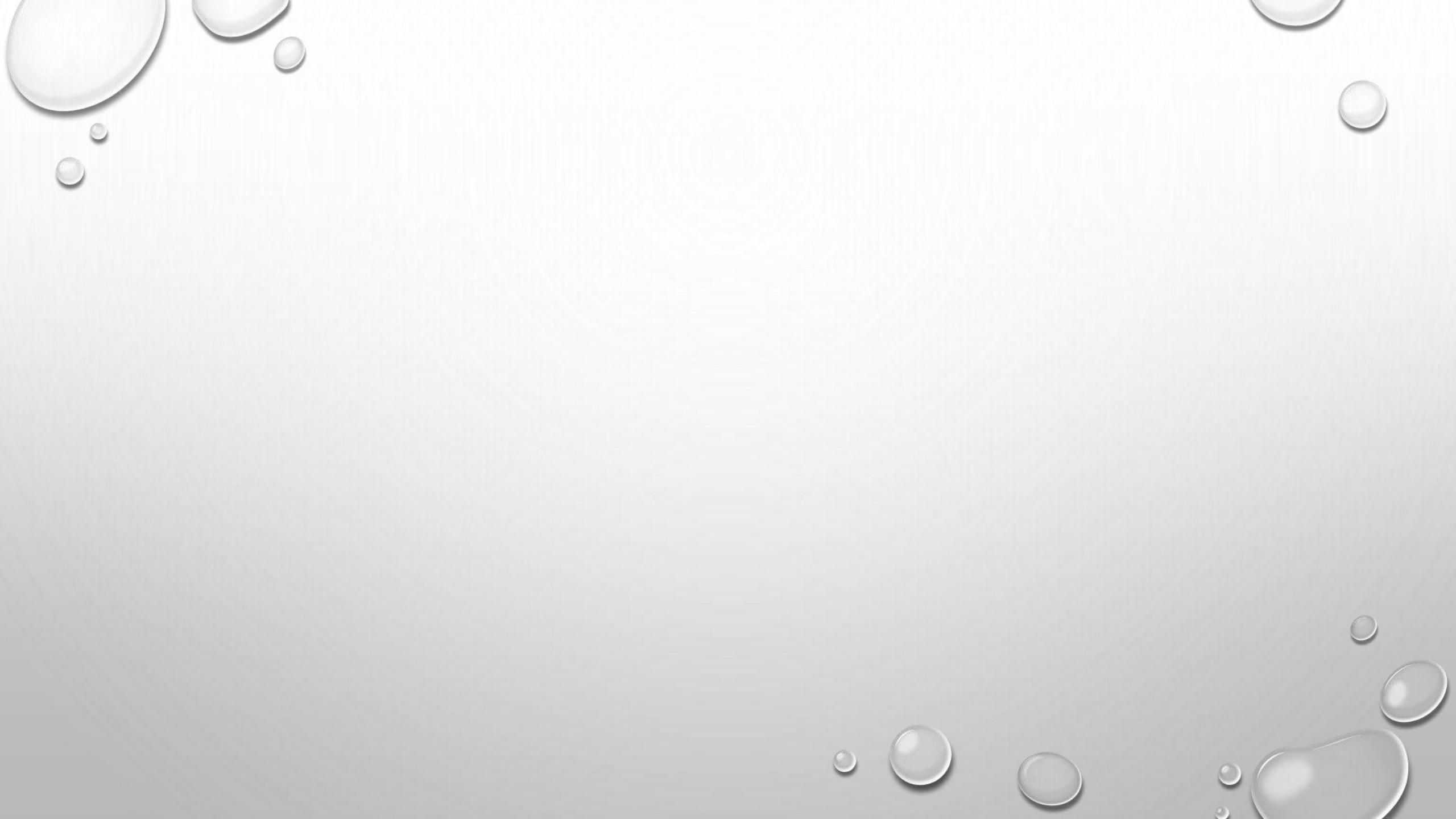
직업과 윤리

- 직업

-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 윤리

- 인간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할 행동 규범



“

보조기기 관련 법령 및 서비스 전달체계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조기기 서비스"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일련의 지원을 말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기기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보조기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보조기기의 지원 등

• **제7조(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4. 그 밖에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 **제8조(보조기기 교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조기기 교부·대여 또는 사후관리

2. 제1호에 필요한 비용 지급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은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또는 사후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등이 자신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적용하고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조기기 서비스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보조기기의 교부·대여·사후관리 및 비용 지급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2조(보조기기업체의 의무)

- ① 보조기기를 생산·판매·유통·대여·수입·수리하는 보조기기업체는 보조기기를 취급함에 있어 장애인등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② 보조기기업체는 보조기기를 판매·유통·대여·수리하는 경우 장애인등에게 사용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보조기기업체는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판매·유통되어 장애인등이 사용 중인 보조기기에 대한 고장수리 등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보조기기센터

- 제13조(중앙보조기기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보조기기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보조기기 관련 정책의 연구 및 개발 사업
 2. 보조기기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연수 및 보조기기 정책 홍보
 3.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제공
 4.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운영 및 관리 지원
 5. 보조기기 이용자 및 이용실태 관련 모니터링
 6. 보조기기 관련 국제협력
 7. 그 밖에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중앙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중앙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중앙센터는 제15조에 따른 보조공학사 등 보조기기 관련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중앙센터의 설치·운영, 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지역보조기기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보조기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보조기기 관련 상담·평가·적용·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전시·체험장 운영
3. 보조기기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4.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5. 보조기기 장기 및 단기 대여, 수리, 맞춤 개조와 제작, 보완 및 재사용 사업
6.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 교부 등에 관한 협조
7. 중앙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협력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적정 규모에 따라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지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지역센터는 제15조에 따른 보조공학사 등 보조기기 관련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역센터의 설치·운영, 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조기기 관련 전문인력

-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공학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 9. 19., 2018. 12. 11.>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보조공학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4. 이 법이나 「형법」 제234조·제317조제1항,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제19조(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공학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조공학사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조기기 이용자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는 때

2. 제17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때

제5장 보조기기 연구개발 및 활성화

- **제21조(보조기기업체의 육성·연구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기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보조기기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생산장려금 지급, 기술지원, 우수업체의 지정, 연구개발의 장려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생산장려금 지급, 기술지원, 우수업체 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보조기기 연구개발의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기에 관한 연구개발활동 및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보조기기 실태조사)**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보조기기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조기기의 이용 실태

2. 보조기기의 품목·지원방법 등에 대한 수요

3. 보조기기의 생산·판매·유통·대여·수입·수리 등의 산업동향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조기기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집·관리할 수 있는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등에게 제공하는 보조기기의 종류와 품목
2. 보조기기를 제공받는 장애인등의 인적사항 및 장애의 유형·정도
3. 보조기기를 제공받는 장애인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받는 공적 급여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조기기 품질의 유지와 향상, 보조기기 이용자 등의 안전과 편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 **제4조(보조공학사의 자격요건)**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해야 한다.

②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별표 1에 따른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을 총 10개 이상 이수했을 것. 이 경우 이수한 과목에는 기초 분야의 과목과 응용·실기 분야의 과목이 각각 3개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
· 단체에서 별표 1에 따른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을 총 10개 이상 이수했을 것. 이 경우 이수한 과목에는 기초 분야의 과목과 응용·실기 분야의 과목이 각각 3개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The background features several realistic water droplets of various sizes, some with highlights and shadows, scattered in the corners of the page. The text is centered in a clean, black, sans-serif font.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조(보조기기의 종류)** 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개인 치료용 보조기기

2. 기술 훈련용 보조기기

3. 보조기 및 의지(義肢)

4. 개인 관리 및 보호용 보조기기

5. 개인 이동용 보조기기

6. 가사용 보조기기

7. 가정·주택용 가구 및 개조용품

8. 의사소통 및 정보전달용 보조기기

9. 물건 및 기구 조작용 보조기기

10. 환경 개선 및 측정용 보조기기

11. 고용 및 직업훈련용 보조기기

12. 레크리에이션용 보조기기

1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장애인 등을 위한 기계·기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의 품목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3조(보조기기의 교부등의 신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또는 사후관리(이하 "보조기기의 교부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보조기기의 교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2. 보조기기의 대여 또는 사후관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기를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보조기기 신청인"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조기기의 교부등의 결정)**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등의 장애 유형·정도 및 경제 상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기기의 교부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지역보조기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에 해당 보조기기의 신청에 대한 상담 및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보조기기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그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1. 해당 보조기기가 의료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2.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 기재된 보조기기 신청인의 장애 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별도의 장애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그 진단을 의뢰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원래의 장애 상태

2. 현재의 장애 상태

3. 재활의료 등에 보조기기가 필요한 경우 해당 보조기기의 종류 및 처방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기기를 교부하거나 대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 대상 품목(이하 "품질관리 대상 품목"이라 한다)에 속하는 보조기기 중에서 해당 보조기기를 교부하거나 대여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 대상 품목이 아닌 보조기기를 교부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1. 제2항 단서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 결과 품질관리 대상 품목이 아닌 보조기기의 교부 또는 대여가 필요한 경우

2. 교부하거나 대여하여야 할 보조기기가 식사 등에 필요한 필수 생활용품으로서 장애인등이 사용하기에 안전하고 편리하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장애의 특성 및 정도를 고려하여 품질관리 대상 품목이 아닌 보조기기를 교부하거나 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5조(보조기기의 교부등의 절차)**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기의 교부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기기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뢰서(제4조제3항에 따른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단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기를 직접 구입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의뢰서를 발급받은 보조기기 신청인은 그 의뢰서를 지역센터의 장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보조기기업체(이하 "보조기기업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의뢰서를 제출받은 지역센터의 장 또는 보조기기업체는 해당 의뢰서에 따라 보조기기 신청인에게 보조기기의 교부등을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기기의 교부등의 비용 지급기준 등)**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보조기기의 교부등을 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청구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3항에 따른 진단서가 있는 때에는 그 진단서에 따라 보조기기의 교부등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료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보조기기의 교부등에 관한 비용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기기 교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2. 보조기기 대여·사후관리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보조기기 신청인이 부담

- **제7조(보조기기 정보 제공의 내용과 방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의 종류와 품목

2. 제3조부터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기기의 교부등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

3. 보조기기 사용 지침 등 보조기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은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서면, 전화 또는 팩스 등을 통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사업명(소관부처)	신청대상자		지급품목	신청기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립기반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이면서 장애인, 시각, 청각장애 (등급무관)지체, 뇌병변, 심장장애 (품목별 등급 확인 필) 발달, 언어 (지적, 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체· 뇌병변장애 - 목욕의자, 휴대용 경사로,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 지체· 뇌병변장애(1~3급) - 기립훈련기, 이동변기,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기,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반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 보호대, 환경조정장치 ·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장애인 -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장애인용 의복,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액세서리 · 뇌병변· 심장장애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 심장장애 - 외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 시각장애 - 녹음 및 재생장치,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음성유도장치(음향 신호기리모콘), 음성시계 · 청각장애 - 시각신호표시기, 헤드폰(청취증폭기), 진동시계 · 뇌병변· 발달· 청각· 언어 장애인 - 대화용장치 	거주시 관할 주민센터 (행정 구역 체계에 따라 읍 또는 면사무소)에 문의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 (의료급여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 보장과)	장애인 (시각, 청각, 지체, 언어장애 등)	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지 보조기- 팔/다리/골반 등 · 휠체어, 전동휠체어/스쿠터, 전동스쿠터용 전지 · 지팡이, 목발, 정형외과용 구두 ·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저시력 보조안경, 콘택트 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등 · 욕창예방 방석, 욕창예방 매트리스, 이동식 전동리프트, 지지위케(전방/후방) 	거주시 관할 주민센터 (행정 구역 체계에 따라 읍 또는 면사무소)에 문의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 (건강보험급여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차상위 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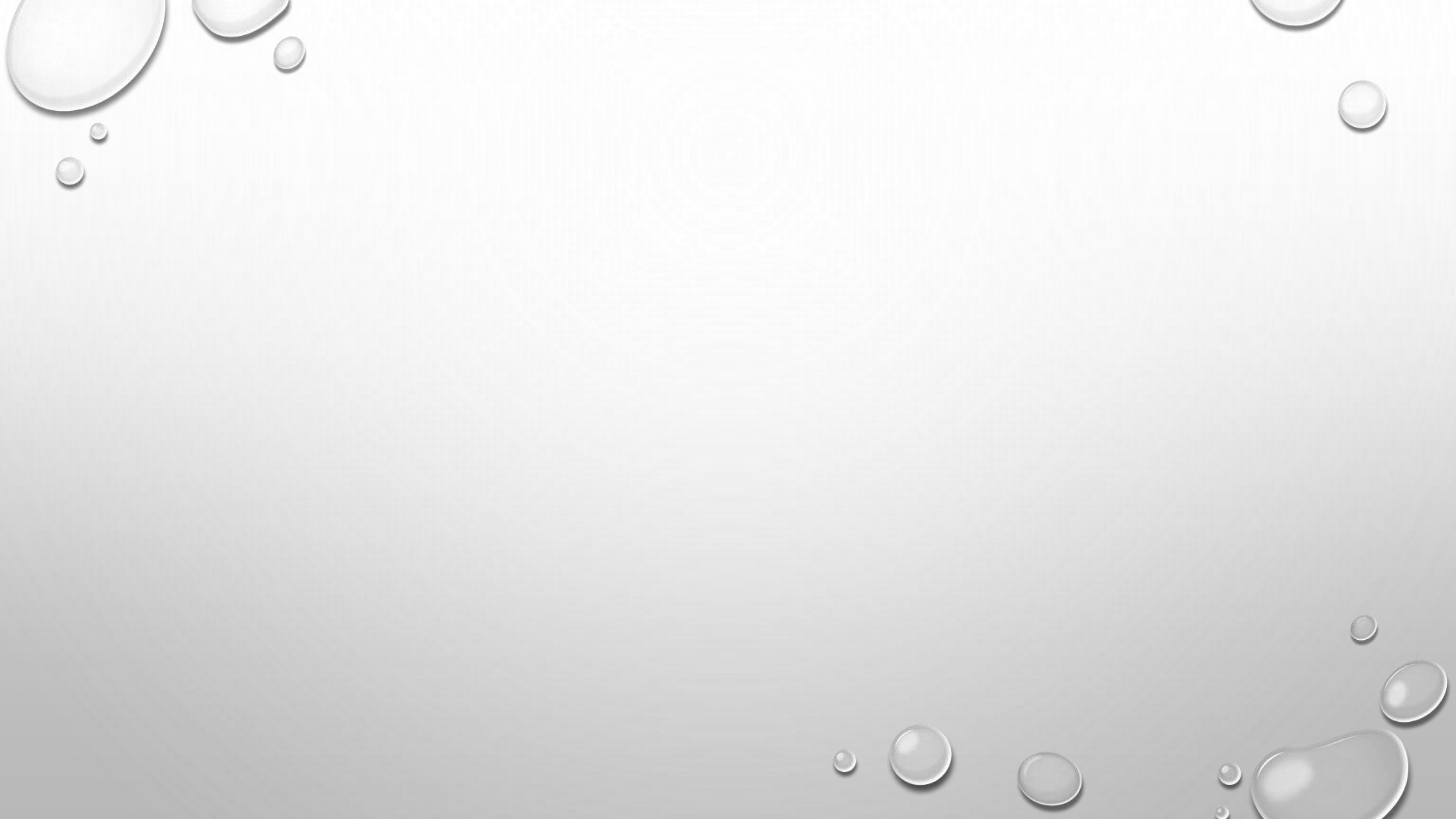
사업명(소관부처)	신청대상자	지급품목	신청기관								
신재보험급여 재활보조기기 지급사업 (고용노동부신재)	신재보험 가입자 산업체해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보장구 품목(상단의 표 내용 참고) 및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급여품목 산재보험 급여품목 : 의지/보조기/욕창예방용구/소변집뇨기/이동기(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활동형 휠체어, 이동식 리프트) 등 전액지원 	1588-0075 <상당 및 서류> 근로복지공단 <지급> 직영병원 또는 재활공학연구소(불가피하고 부득이한 경우 거주지 관내 의료기관)								
국가유공자 보철구지급사업 (보훈처 보훈의료과)	전산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 상이자로서 신체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지의자-어깨관절, 팔, 손의자 등 하지의자-엉덩이관절, 넓적다리, 무릎관절의자 등 기타-전지의수, 목발, 인공후드, 독서확대기, 등 전액지원 	1577-0606 <상당> 보훈상담센터 <신청> 중앙장애인재활병원 <제작및수납>보훈병원 보철구센터 <검수>보훈병원 보철구센터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을 고용한(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단체의 장)가 사용자를 지정하여 신청하고, 고용해제 시 기기는 공단에 반납 품목 : ①정보접근-점자프린터, 확대독서기 등 ②착입기구-테이블, 특수작업의자 등 ③의사소통-신호장치, 골도전화기 등 ④사무보조-음성메모기, 수화기홀더 등 ⑤차량용-우전·담승·탑재 보조장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2">보조공학기기</td> <td>고용유지 조건 유지</td> <td>장애인 1인당 1,000만원 (중증 1,500만원) 한도</td> </tr> <tr> <td>무상지원</td> <td>장애인 1인당 300만원 (중증 500만원) 한도 지원</td> </tr> <tr> <td>차량용 보조공학기기</td> <td>고용유지 조건 유지</td> <td>장애인 1인당 1,500만원 한도 지원</td> </tr> </table>	보조공학기기	고용유지 조건 유지	장애인 1인당 1,000만원 (중증 1,500만원) 한도	무상지원	장애인 1인당 300만원 (중증 500만원) 한도 지원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고용유지 조건 유지	장애인 1인당 1,500만원 한도 지원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	고용유지 조건 유지	장애인 1인당 1,000만원 (중증 1,500만원) 한도									
	무상지원	장애인 1인당 300만원 (중증 500만원) 한도 지원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고용유지 조건 유지	장애인 1인당 1,500만원 한도 지원									
노인장기 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사업 (기타재가급여: 요양보험제도과)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로 장기요양등급 5등급 이상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입품목 :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미끄럼 방지매트, 미끄럼 방지액, 미끄럼 방지알발), 간이번기(간이대번기·소번기), 지팡이, 욕창예방 방석, 자세변환용구 대여품목 :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 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검사로 급여비용 본인 부담률 : 일반대상자 15%, 경감대상자 7.5%,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문화과)	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아동복지법에 의거한 요보호아동, 국가유공자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점자정보 단말기, 점자 출력기, 데이지 플레이어, 광학문자판독기, 화면확대 소프트웨어, 점자 라벨기,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터치 모니터, 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언어훈련 소프트웨어, 무선신호기, 음성증폭기 등 본인 부담금 : 일반대상자 2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0% 	한국정보화진흥원 02-1588-2670								

정부 부처별 보조기기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기]
- 의료급여법 제2조
- 의료급여법 제13조
-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제7조
-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제9조 [별표]

정부 부처별 보조기기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3]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2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4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8항



“

장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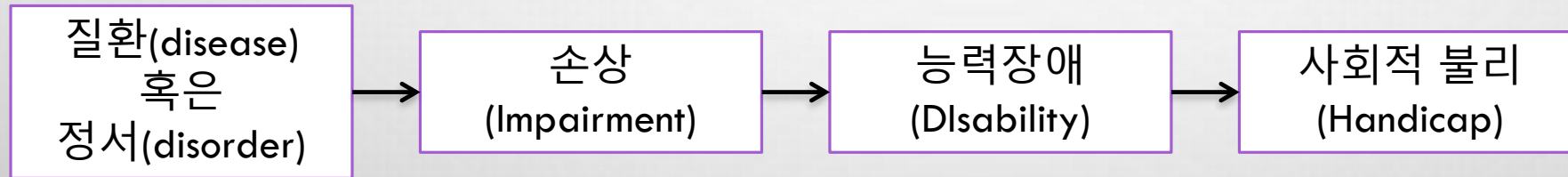
”

장애인 복지법

- 장애인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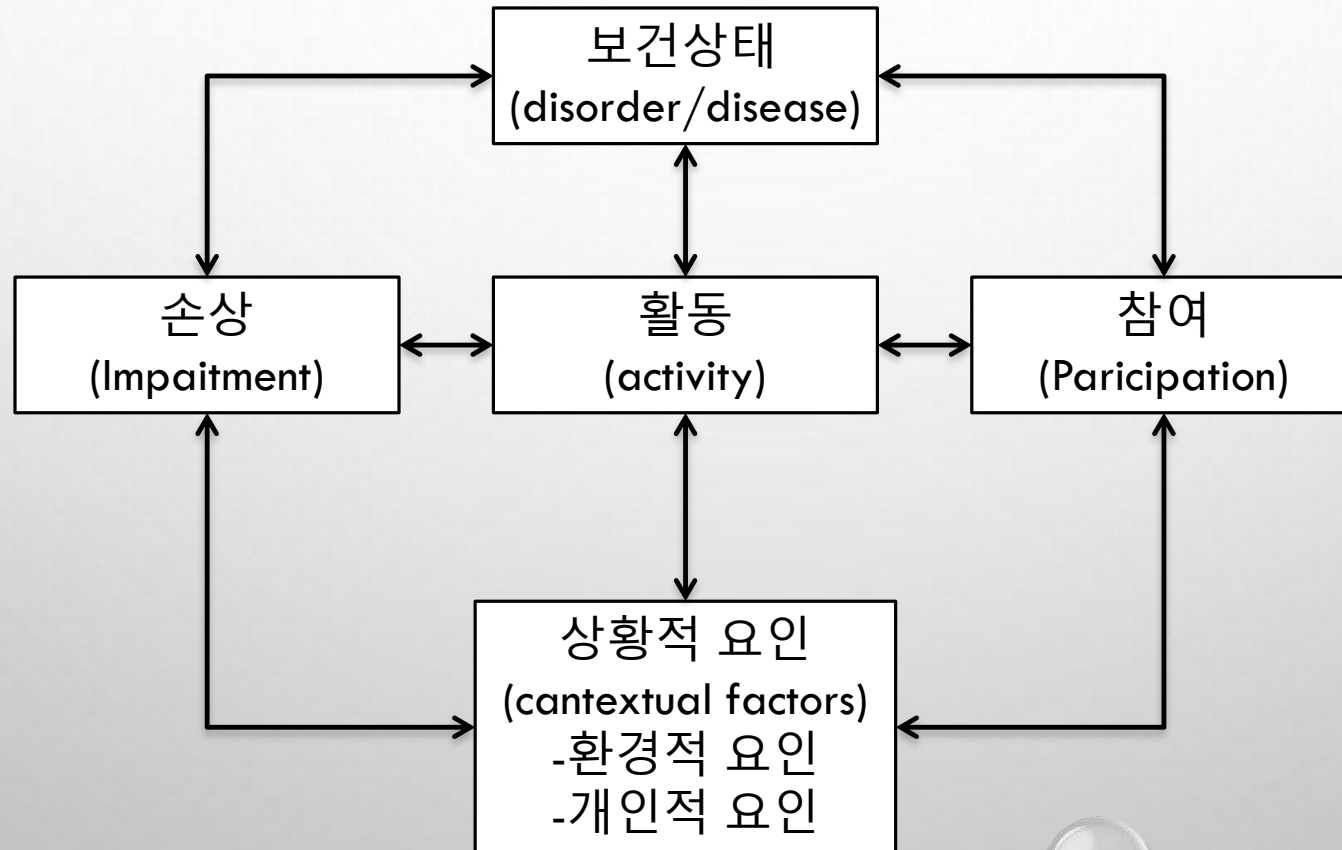
WHO 장애 모델

- ICIDH-1 (1980)



WHO 장애 모델

• ICDH-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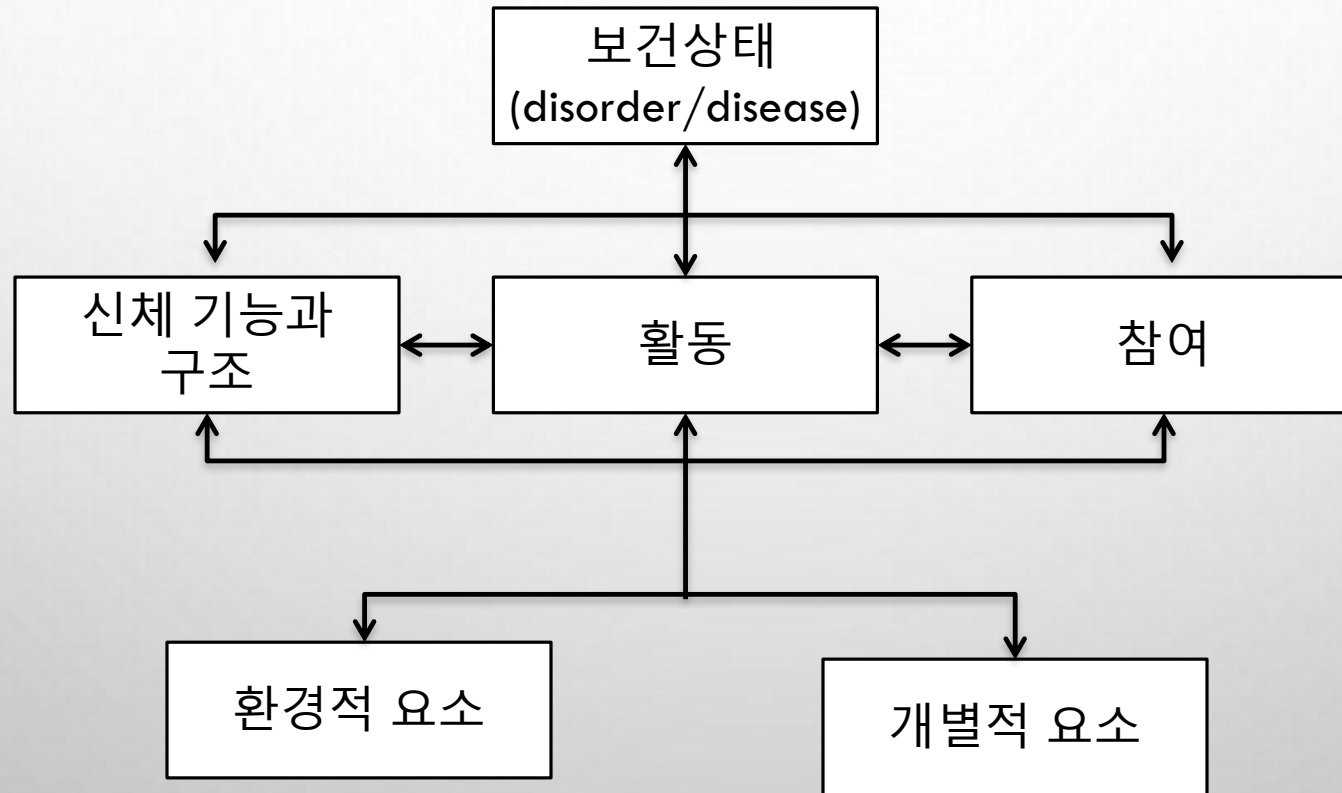


WHO 장애 모델



WHO 장애 모델

- ICF



장애 유형 및 특성

- 지체장애
- 뇌병변 장애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언어장애
- 지적장애
- 정신장애
- 자폐성장애
- 신장장애
- 심장장애
- 호흡기장애
- 간장애
- 안면장애
- 장루 및 요루 장애
- 뇌전증 장애

인권과 학대 예방

- 장애인 학대의 유형 및 예방
- 장애인 인권
- 장애인 생존권, 소득보장
- 장애인복지법 제4조
- 장애인복지법 제8조



“

재활공학

”

“

재활학

”

재활의 개념

- REHABILITATION

- 참여의 기회
- 개인대상
- 개인의 목표달성
- 가교의 역할
- 시간적으로 제한된 과정
- 협력과 조정이 기반

- 재활의 대상자는?

재활의 목표

- 장애인의 최적의 기능 수준을 되찾아 최상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 ① 장애의 예방
 - ② 기능향상
 - ③ 사회적 통합
 - ④ 인간다운 권리 회복

분야별 재활 서비스

- 의료재활
 - ✓ 의학적인 측면. 재활의 중심적 역할
- 교육재활
 - ✓ 특수교육
- 고용 및 직업재활
 - ✓ 일할 권리와 의무를 비장애인과 똑같이
- 심리 재활
 - ✓ 전인재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심리적 안정
- 보조기기
 - ✓ 장애인들이 손상된 부위를 공학기술을 통해 재활
- 성기능 및 성 재활

재활행정 및 정책

-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재활 정책을 결정하고 결정된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

참고문헌

보조공학총론, 이근민 외, 학지사
장애학, 나운환, 나눔의집
재활행정, 나운환 외, 집문당
장애편람, 이달엽, 대구대학교출판부